더샵 송도그란테르 G5-11블록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

THE SHARP

청약Home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 청약Home 앱 설치 바로가기

1 단지 주요정보

주택유형	해당지역	기타지역	규제지역 여부
민영	인천광역시 거주자	서울특별시, 경기도 거주자	비규제지역

재당첨제한	전매제한	거주의무기간	분양가상한제	택지유형
없음	6개월	없음	미적용	민간택지 /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2 청약 및 계약 주요일정

구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1순위	일반공급 2순위	당첨자발표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정	2026.05.19.(화)	2026.05.20.(수)	2026.05.21.(목)	2026.06.01.(월)	2026.06.03.(수) ~ 2026.06.07.(일)	2026.06.13.(토) ~ 2026.06.16.(화)
방법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 (현장접수) 사업주체 견본주택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 (현장접수) 청약통장 가입은행		• (PC·모바일) 청약홈	• 사업주체 견본주택 -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201 (송도동 37-2)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신청유형 및 주택명 선택 → 청약자격 등 입력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완료					

3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도시건축과-9804 (2026. 5. 6.)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32-15(G5-11BL)
▣ 공급규모 : 지하2층~지상20층 4개동, 아파트 총 318세대[특별공급 104세대(기관추천 9세대, 경제자유구역 27세대, 다자녀가구 27세대, 신혼부부 23세대, 노부모부양 9세대, 생애최초 9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 2029년 8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단위 : ㎡, 세대)

주택 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 기준)	약식 표기 (타입)	주택공급면적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기타 공용 면적(지하 주차장등)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총공급 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기관 추천	경제자유 구역	다자녀 가구	신혼 부부	노부모 부양	생애 최초	계	일반 공급 세대수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
2026 000169	01	084.8600H	84H	84.8600	24.4935	109.3535	66.2484	175.6019	44.9396	34	3	3	3	7	1	3	20	14	2
	02	084.7800I	84I	84.7800	25.3048	110.0848	66.1858	176.2706	44.8973	36	3	3	3	8	1	3	21	15	2
	03	084.5600J	84J	84.5600	25.3832	109.9432	66.0142	175.9574	44.7808	36	3	3	3	8	1	3	21	15	2
	04	100.9800A	100A	100.9800	29.7144	130.6944	78.8328	209.5272	53.4764	34	-	3	3	-	1	-	7	27	2
	05	100.5800B	100B	100.5800	29.1306	129.7106	78.5205	208.2311	53.2645	34	-	3	3	-	1	-	7	27	2
	06	100.9500C	100C	100.9500	29.8474	130.7974	78.8094	209.6068	53.4605	36	-	3	3	-	1	-	7	29	2
	07	124.7300H	124H	124.7300	36.1449	160.8749	97.3742	258.2491	66.0538	34	-	3	3	-	1	-	7	27	2
	08	124.8300I	124I	124.8300	36.0483	160.8783	97.4522	258.3305	66.1067	36	-	3	3	-	1	-	7	29	2
	09	128.1100H	128H	128.1100	37.0476	165.1576	100.0136	265.1712	67.8437	36	-	3	3	-	1	-	7	29	2
	10	198.8600C	198PC	198.8600	59.0688	257.9288	155.2467	413.1755	105.3168	2	-	-	-	-	-	-	-	2	-
합계										318	9	27	27	23	9	9	104	214	18

※ 주택형 구분은 입주자모집공고 및 청약신청 시('청약홈') 구분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카탈로그/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금액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 (약식표기)	84H	84I	84J	100A	100B	100C	124H	124I	128H	198PC
최저가	1,180,000,000	1,187,000,000	1,186,000,000	1,434,000,000	1,397,000,000	1,408,000,000	1,740,000,000	1,740,000,000	1,760,000,000	3,345,000,000
최고가	1,233,000,000	1,241,000,000	1,240,000,000	1,500,000,000	1,461,000,000	1,473,000,000	1,819,000,000	1,819,000,000	1,841,000,000	3,345,000,000

※ 상기 공급금액은 발코니 확장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 납부일정

계약금(5%) 1차	2차	중도금(60%) 1차(10%)	2차(10%)	3차(10%)	4차(10%)	5차(10%)	6차(10%)	잔금(35%)
계약 시	계약 후 30일 이내	2026.10.05	2027.03.05	2027.08.05	2028.05.04	2028.09.05	2029.01.05	입주지정일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금융기관명	납부계좌	예금주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	수협은행	1130-0064-1686	케이비부동산신탁㈜

• 상기 지정 계좌로 직접 무통장 입금[동·호수, 공급신청자(계약자) 성명으로 입금]하고 무통장 입금증을 계약 시 지참하여 주십시오.
(무통장 입금 시 예시 : 101동 101호 홍길동 계약자일 경우, 입금자명을 '1010101홍길동'으로 기재)
•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약정된 납부 일정에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며, 사업주체는 납부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로 안내해 드리지 않습니다.
• 상기 분양대금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다른 형태의 입금 및 납부는 효력이 없으며, 계약자는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않은 금액에 대하여 분양대금 납입을 인정받지 못함에 있어 사업주체의 책임이 없습니다.(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다른 형태의 입금 및 납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의 대금 오납입에 따라 계약 미체결, 연체료 발생 등의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가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금 입금 후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 이자는 없습니다.

4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구분	내용
공급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및 제55조의3을 적용하는 경우 특별공급 횟수 제한 예외)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명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다만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부부는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중복청약할 수 있으며, 중복당첨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구분 / 처리방법 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 /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 - 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 /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 -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 / 모두 부적격 처리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통장 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원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자격을 필요로 하는 특별공급 청약이 불가합니다.
무주택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4-1 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9세대

구분	내용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 해당 기관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단,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당첨자 선정방법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자격요건을 갖춘 분은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하므로 사업주체 및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대상자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확정 대상자 및 예비 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분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청약접수일에 청약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되며 계약 불가)

4-2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8조)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27세대

구분	내용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해당 기관장이 선정한 인천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 투자기업 종사자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당첨자 선정방법	1.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구비서류를 갖춰 먼저 사업주체에 신청하여야 하며, 사업주체는 특별공급 신청자 현황을 작성하여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제출합니다. 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8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당첨확정자 및 예비자가 선정되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 사업주체에 대상자를 통보합니다. 3.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은 사업주체에 통보된 자만 특별공급 신청일에 인터넷 접수가 가능하며, 대상자(당첨 확정자 또는 예비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접수일에 인터넷 청약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청약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되며 계약 불가)

4-3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27세대

구분	내용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과거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 가능함 ■ 만19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태아, 입양자녀 포함)이 있는 분 - 자녀는 민법상 미성년자를 말하며, 자녀가 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지역 → ②배점 → ③미성년 자녀수 → ④청약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분 → ⑤추첨 ■ ①지역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시·도(인천광역시) 거주자 50% → 기타지역(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거주자 50%

4-4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23% 범위 : 23세대

구분	내용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동일인과의 재혼인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포함)인 분 ■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소득구분 → ②순위 → ③지역 → ④미성년 자녀수 → ⑤추첨 ■ ①소득구분 단계 / 소득구분 / 내용 1단계 / 신생아 우선공급(2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맞벌이인 경우 120% 이하) 2단계 / 신생아 일반공급(10%)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맞벌이인 경우 160% 이하) 3단계 / 우선공급(25%)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맞벌이인 경우 120% 이하) 4단계 / 일반공급(10%)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맞벌이인 경우 160% 이하) 5단계 / 추첨공급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40% 초과하나(맞벌이인 경우 160% 이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나, 2단계 신청자 중 낙첨자는 3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4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 ※ 1단계 및 2단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②순위를 고려하지 않고 ③지역 → ④미성년 자녀수 → ⑤추첨의 순서에 따라 선정 ※ 5단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순위와 관계없이 해당지역(인천광역시 거주자) 거주자 50% → 기타지역(서울특별시, 경기도) 거주자 50%에게 우선공급하고,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 ■ ②순위 순위 / 내용 1순위 /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분 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 ■ ③지역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인천광역시) 거주자 50% → 기타지역(서울특별시, 경기도) 거주자 50%

4-5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공급 세대수의 3% 범위 : 9세대

구분	내용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한 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지역 → ②가점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 ■ ①지역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인천광역시) 거주자 50% → 기타지역(서울특별시, 경기도) 거주자 50% ■ ②가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가점제 적용기준)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기준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청약가점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부적격 당첨 처리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청약신청자에게 있음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하지 않음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 -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4-6 생애최초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9% 범위 : 9세대

구분	내용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 -모든 세대구성원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를 말함 ※ (예외)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처분한 주택소유 이력은 배제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아래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분 - 가.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청약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가 있는 분 - 나. 1인 가구 (혼인 중이 아니면서 미혼인 자녀도 없는 분) * 1인 가구는 추첨제로만 신청가능하며, '단독세대'와 '단독세대가 아닌 분'으로 구분됨 * '단독세대'란, 단독세대주이거나, 동거인이나 형제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분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단독세대 신청자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신청 가능함 ※ 본 단지는 전용면적 60㎡ 초과 공급 단지로서 단독세대 신청이 불가함 * '단독세대가 아닌 분'이란, 직계존속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 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분을 포함 **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소득구분 → ②지역 → ③추첨 ■ ①소득구분 단계 / 소득구분 / 내용 1단계 / 신생아 우선공급(1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2단계 / 신생아 일반공급(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3단계 / 우선공급(35%)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4단계 / 일반공급(15%)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5단계 / 추첨공급 -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5단계 / 추첨공급 - 1인 가구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이하이거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나, 2단계 신청자 중 낙첨자는 3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4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 ■ ②지역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인천광역시) 거주자 50% → 기타지역(서울특별시, 경기도) 거주자 50%

5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구분	내용
대상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 순위별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분
청약통장 자격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1순위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2순위 : 예치금액과 관계없이 청약예금·청약부금·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분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구분 /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 그 밖의 광역시 /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 3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 600만원 / 400만원 /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 1,000만원 / 700만원 / 400만원 모든 면적 / 1,500만원 / 1,000만원 / 500만원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함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 선정 순서 - 1순위 가점제 : ①지역 → ②가점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 - 1순위 추첨제 : ①지역 → ②무주택자 우선공급 → ③추첨 - 2순위 : ①지역 → ②추첨 ■ ①지역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인천광역시) 거주자 50% → 기타지역(서울특별시, 경기도) 거주자 50% ■ ②가점 -전용면적별 1순위 가점제/추첨제 적용비율 구분 / 가점제 / 추첨제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 40% / 60% 전용면적 85㎡ 초과 / - / 100%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분 및 그 세대원은 가점제 청약이 불가하며,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 시 부적격 처리됩니다. ※ 1순위 가점제 당첨 시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어,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당첨자발표일로부터 2년간 다른 민영주택의 1순위 가점제 청약이 불가합니다.

6 기타사항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건축감리	전기감리	소방감리	통신감리
회사명	㈜나로이앤씨	㈜건일엠이씨	해성종합기술㈜	㈜이룸이앤씨
금액	3,188,975,900	771,290,840	1,060,191,128	132,000,000

※ 상기금액은 감리회사와의 계약변경 등으로 증감될 수 있음(이 경우 별도 정산하지 않음)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분	사업주체 및 시행수탁사	시공업체	시행위탁사
회사명	케이비부동산신탁㈜	㈜포스코이앤씨	송도국제도시개발(유)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298(역삼동)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중흥로 307(죽도동)	인천광역시 연수구 센트럴로 194, 상가 에이동 3층(송도동, 더샵 센트럴파크2)
법인등록번호	110111-1348237	174611-0002979	110114-0037603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중요 사항만을 게재하였으며, 청약자는 필히 입주자모집공고(전문)을 숙지하여 청약신청 및 계약 체결하여야 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주체 견본주택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 관계법령이 우선함)

■ 분양홈페이지 : https://더샵송도그란테르.kr
■ 견본주택 위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201 (송도동 37-2)

1600.0255

아파트 1,544세대 84㎡~198㎡PH | 오피스텔 96실 84㎡ | 판매시설

시행/수탁 KB부동산신탁(주) 위탁 송도국제도시개발(유) 시공 (주)포스코이앤씨